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97
----------	-----

2019년 2월 26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2월 1일, 박상구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7일
다. 상정일자 :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2월 26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상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6년 10월 25일에 개정된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은 제1조의 2에서 “재해약자”의 개념을 두고 “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”을 고려한 대처사항을 소방업무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재난약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재난 대피소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피주민의 특성, 사생활보호, 안전, 모성권 보장 등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

바 대피소의 관리에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재난약자로 규정함 (안 제2조)
- (2) 대책본부의 기능 가운데 “동원명령、대피명령、통행제한”을 “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、대피명령、통행제한”으로 규정하여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명시함 (안 제15조)
- (3) 재난발생에 따라 대피소를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(안 제4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재난약자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‘대책본부’)의 기능 중 응급조치 시에 재난약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, 재난대피소의 관리에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시설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.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“재난약자”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<u>동원명령 · 대피명령 · 통행제한</u> 등의 응급조치 3. ~ 9. (생 략)	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.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<u>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 · 대피명령 · 통행제한</u>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정비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-----. <u>이 경우 시설이 살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■ 재난약자 정의 신설 및 배려 건(안 제2조 및 제15조)

- 안 제2조에 “재난약자”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은 대책본부의 기능 중 현행 제15조제2호의 기능 즉, ‘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’ 기능에 재난약자를 고려토록 하려는 것으로,
- 본 안의 발의자(박상구 의원)는 「소방기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“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”를 포함토록 규정한 점을 들어 본 조례에도 이처럼 재난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담자는 취지임.
- 이는 소방업무나 재난관리가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소방업무와 마찬가지로 대책본부의 재난관리 기능 수행 과정에서도 재난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 사료됨.
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의3호¹⁾의 용어정의에 본 개정안이 제안한 “재난약자”라는 용어 대신에 “안전취약계층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 제2조 및 제15조의 “재난약자”를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.
- 더불어, 현행 조례 제57조 제목에서도 “재난취약계층”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1)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[표]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_____ _____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“재난약자”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_____ _____. 1. ~ 11. (개정안과 같음) 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. ~ 9. (생략)	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 _____. 1. (현행과 같음) 2 _____ 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_____ 3. ~ 9. (현행과 같음)	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 _____. 1. (개정안과 같음) 2 _____ 안전취약계층을 _____ 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생략)	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	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

■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간이시설 설치 건(안 제43조)

- 안 제43조는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피소 관리와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시설 등을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,
- 실제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 시, 이재민 1천여 명이 실내체육관·학교 등의 대피소에 머물면서 사생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재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면서 사회쟁점으로 부각되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([사진] 참조).



<‘17년 포항 당시 흥해실내체육관>



<사생활 공간이 마련된 대피소>

[사진]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여부 비교 사진

- 참고로,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는 대피소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지진옥외대피소 1,509개소, 이재민임시주거시설 965개소, 민방위 대피시설 3,203개소 등에 해당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97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안 일 자 : 2019년 2월 26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관련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의3호에 “안전취약계층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“재난약자”를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“재난약자”를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12호 및 제15조제2호).
- “재난취약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함(안 제57조 제목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15조제2호 중 “재난약자를”을 “안전취약계층을”로 한다.

안 제57조의 제목 “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을 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“재난약자”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</p> <p>3. ~ 9. (생략)</p>	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<u>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</u> -----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<u>안전취약계층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생략)</p>	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동원명령、대피명령、통행제한”을 “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、대피명령、통행제한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7조의 제목 “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을 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
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<u>동원명령</u> · <u>대피명령</u> · <u>통행제한</u> 등의 응급조치 3. ~ 9. (생 략)	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안전취약계층</u> 을 고려한 <u>동원명령</u> · <u>대피명령</u> · <u>통행제한</u> ----- 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· 정비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u>
제57조(<u>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</u>) ① ~ ③ (생 략)	제57조(<u>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